

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0. 10. 14.

복 지 전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 김규식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, 존속기한을 연장(2025.12.31.)하여 관내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존 존속기한 조정(안 제2조의 2)

1) 2020년 12월 31일 → 2025년 12월 31일

나. 준용 법령 제명 변경(안 제6조)

다.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규정 추가(안 제8조5항)

라. 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수정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0. 9. 1. ~ 9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1)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는 것이고, 안 제8조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2) 규정에 따라 성비 준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로관리와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이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1)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2) [붙임1] 참조

<붙임 1>

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.>

1. 직종·직급·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

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

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

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

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시행일 : 2020. 11. 20.] 제21조